

## 5.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 보고

의료지원과 : 정지애 ☎2133-9300 · 마약대응팀장 : 박행엽 ☎7518 담당 : 김미라 ☎9312

### □ 관련근거

- 지방재정법 제43조,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및 제40조
-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지원을 위한 예비비사용 계획시민건강국, '23.08.10.)

### □ 사업개요

- (지원대상) 마약류 투여력이 있는 서울시민(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)
- (치료보호기관) 서울시립 은평병원(서울시), 인천참사랑병원(인천시)
- (치료보호 내용) 정신의학적 증상 치료, 단약유지를 위한 재활치료 등
  - 치료보호기관 판단으로 입원 또는 외래진료 병행(최초 2개월, 최장 12개월 지원)
- (지원절차) 자의신청(검찰의뢰) → 심의 → 치료보호명령 → 치료보호 및 비용지급
- 소요예산 : 462,800천원(기존 260,000천원, 추가확보 202,800천원)
  - 추가확보 예산 : 국비 101,400천원, 매칭시비(예비비) 101,400천원
  - ※ 예비비로 매칭시비 확보(8. 18.)함에 따라 이후 국고보조금 예산 간주처리 완료(8. 25.)

### □ 예비비 사용 사유 및 내역

- (대상자 및 치료비 증가) '21년도부터 치료대상자 급증 및 치료비\* 증가
  - \* '23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외래보다는 입원치료 권장  
(입원률 증가 4%('22년) → 45%('23년), 외래보다는 입원비가 7배 높음)
- (국고보조금 교부) 치료보호비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결정(7.31.)에 따라, 매칭시비 마련을 위한 **예비비 101,400천원 확보필요**

(단위 : 천원)

부서	정책사업	단위사업	세부사업	예산과목		예산 현액	사용승인액		승인 후 예산현액 (8.18. 기준)
				편성목	통계목		증	감	
예산 담당관	예비비 (예비비)	예비비 (예비비)	예비비	예비비 (801)	재해·재난 목적 예비비	87,921,516		101,400	87,820,116
의료지원과	의약분야 관리체계구축	지역의료기능 강화	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	민간이전 (307)	의료 및 구료비	(×130,000) 260,000	101,400		(×130,000) 361,400

※ 승인 후 예산현액은 국비 101,400천원 미포함